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027

2025년 9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25년 8월 11일

다. 회 부 일 : 2025년 8월 14일

라. 상 정 일 : 제33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5년 9월 8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가. 제안이유

○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를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의 목록에 추가 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50플러스캠퍼스 시설 목록에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를 추가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 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 없음.

(7) 그 밖에 입법인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5.6.5. ~ 6.25.)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본 개정안')은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가 새롭게 개관(2025.2.10.)함에 따라, 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별표)에 반영하고,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음.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 시설 현황〉

- 개관일: 2025.2.10.

- 위 치: 광진구 능동로3길 73

- 연면적: 4,181.17㎡ (지하1~지상4층)

※ 지하1~3층 주차장 6,851.15㎡ 별도

- 주요시설: 사무실,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강의실, 강당, 상담센터,

모두의 라운지 등



<7호선 자양역 1번 출구 도보 8분>

출처 : 제33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2025.8.11. 제출) 발췌

※ 본 개정안의 내용

-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신설 등
 - 별표 1을 별표로 변경 (안 별표)
 -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 명칭 및 위치 신설 (안 별표)

· 용어 정비 등

- · 자구 수정 (안 제2조, 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4, 안 제6조의4제3호, 안 제6조의5)
- 붙여쓰기, 띄어쓰기 (안 제6조의2제1호·제2호 안 제6조의4제1호부터 제6호까지, 안 제7조제2항)
- 조문 삭제 (제6조의4제1항제7호 삭제)

가.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신설 등 (안 별표 관련)

- 안 별표는 금년(2025.2.10.)에 개관한 인생이모작지원시설(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의 명칭 및 위치를 반영하고, 별표 표기를 변경("별표 1" → "별표") 하려는 것으로.
- 본 조례(제6조의2)에서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 1"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표 1" 외에 별표 또는 서식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됨.
- 다만, 향후 추가적인 별표가 신설되는 경우 현행과 같은 형태로 재개정 ("별표" → "별표 1")이 필요하게 되는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지는 살펴보아야 할 것임.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제6조의2 관련)				[별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제6조의2 관련)			
시 설 명	명 칭	소 재 지		시 설 명	명 칭	소 재 지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2길7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2길7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50플러스 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구로구 오류로 36-25		50플러스 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구로구 오류로 36-25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도봉구 마들로 13길84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도봉구 마들로 13길84	
	<신 설>	<신 설>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	광진구 능동로 3길 73	

-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의 구분)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 1. 50플러스캠퍼스 : 중장년층의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상담, 교육, 일, 여가·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역거점 시설
 - 2. 50플러스센터 : 중장년층의 교육·상담, 사회공헌 및 사회참여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역주 민에게 제공하는 지역기반 시설

나. 용어 정비 등

- 1) 조문 삭제 (조례 제6조의4제1항제7호 관련)
- 본 개정안은 본 조례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삭제 하려는 것으로, 감면적용 유효기간(2020.12.31.)이 지나 효력이 사라진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해당 규정은 소상공인 긴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사용료를 시장이 감면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감면)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일몰조항(한시조항)1)으로,
- 최초 규정 신설(2019.5.2. 신설) 당시의 감면적용 유효기간(2019년 12월 31일까지)이 한 차례 연장(2019.12.31. 개정,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되었으나, 이후 추가 연장 없이 감면적용 유효기간이 지나 정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감면 실적이 미미하여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가 현재 시점에서도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1.~ 6. (생략)

7.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줄임.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사용료를 줄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조례 제7110호(2019. 5. 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제[항제7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부 칙 〈제7110호.2019.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6조의4제1항제7호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12.31〉

¹⁾ 입법자가 정한 특정기한이 도래하면 법령의 전부나 일부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는 조항

2) 그밖에 용어 정비

- 개정안은 지구 수정(안 제2조, 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4, 안 제6조의4제3호, 안 제6조의5), 붙여쓰기(쌍점*, 안 제6조의2제1호·제2호, 안 제6조의4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띄어쓰기 (안 제7조제2항) 등 용어를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 안 제2조: "정의는" → "뜻은"
 - 안 제6조의2: "별표 1과" → "별표"
 - 안 제6조의2제1호: "50플러스캠퍼스:" → "**50플러스캠퍼스:**"
 - 안 제6조의2제2호: "50플러스센터:" → "**50플러스센터**:"
 - 안 제6조의4: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①" →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 안 제6조의4제1호 : "수급자 :" → "**수급자:**"
 - 안 제6조의4제2호 : "가족 :" → "**가족:**"
 - 안 제6조의4제3호 : "자 :" → "**사람:**"
 - 안 제6조의4제4호 : "수급자 :" → "**수급자:**"
 - 안 제6조의4제5호 : "제외한다) :" → "**제외한다):**"
 - 안 제6조의4제6호 : "경우 :" → "**경우**:"
 - 안 제6조의5 : "시용" → "**사용**"
 - 안 제7조제2항: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 쌍점(:)의 사용법(「한글 맞춤법」부록,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2호)
 - (1) 표제 다음에 해당 항목을 들거나 설명을 붙일 때 쓴다.
 - 예 문방사우: 종이, 붓, 먹, 벼루
 예 일시: 2014년 10월 9일 10시
 예 흔하진 않지만 두 자로 된 성씨도 있다.(예: 남궁, 선우, 황보)
 예 올림표(#): 음의 높이를 반음 올릴 것을 지시한다.
 - (2) 희곡 등에서 대화 내용을 제시할 때 말하는 이와 말한 내용 사이에 쓴다.
 - 예 김 과장: 난 못 참겠다. 예 아들: 아버지, 제발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3) 시와 분, 장과 절 등을 구별할 때 쓴다.

예 오전 10:20(오전 10시 20분) 예 두시언해 6:15(두시언해 제6권 제15장)

(4) 의존명사 '대'가 쓰일 자리에 쓴다.

예 65:60(65 대 60)

예 청군:백군(청군 대 백군)

[붙임] 쌍점의 앞은 붙여 쓰고 뒤는 띄어 쓴다. 다만, (3)과 (4)에서는 쌍점의 앞뒤를 붙여 쓴다.

○ 조례의 용어·문장·체계 등을 정비하는 것은 조례의 규정 내용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027

제출년월일: 2025년 8월 11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를 인생이모작지원시설의 목록에 추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50플러스캠퍼스 시설 목록에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를 추가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3) 감사담당과(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 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6. 5. ~ 6. 25.)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 작성자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허준오(☎ 2133-3963)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과"를 "별표와"로 하고, 같은 조 제 1호 중 "50플러스캠퍼스 :"를 "50플러스캠퍼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50플러스센터 :"를 "50플러스센터:"로 한다.

제6조의4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급자 :" 를 "수급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가족 :"을 "가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 :"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수급자 :" 를 "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외한다) :"를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경우 :"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5 중 "시용"을 "사용"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한다.

별표 1을 별표로 하고, 같은 표의 50플러스캠퍼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2길7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50플러스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구로구 오류로 36-25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도봉구 마들로 13길84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	광진구 능동로 3길 7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는 용어의 <u>정의는</u> 다음 각 호와	뜻은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제6조의2(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의
구분)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구분)
설치 · 운영하는 인생이모작 지	
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	
분하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u>별표 1과</u> 같다.	별표와
1. 50플러스캠퍼스 : 중장년층의	1. 50플러스캠퍼스:
다양한 욕구에 기반한 상담,	
교육, 일, 여가・문화 등을 종	
합적으로 지원하는 광역거점	
시설	
2. 50플러스센터 : 중장년층의	2. <u>50</u> 플러스센터:
교육ㆍ상담, 사회공헌 및 사회	
참여활동 등의 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는 지역기반	
시설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①	제6조의4(사용료의 감면 등)
시장은 제6조의3제1항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생이모작 지원시 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면제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u>가</u>족: 면제
-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면제
- 4.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 급여 수급자 : 면제
- 5. 중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자치구 는 <u>제외한다)</u>: 기본시설 사용 료의 100분의 50을 줄임
- 6. 중장년층의 능력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단체가 사 용허가를 받은 <u>경우</u>: 기본시 설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줄 임
- 7.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 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

<u>.</u>
1
<u>수급자:</u>
2
<u>가족:</u>
3
사람:
4
<u>수급자:</u>
5
<u>제외한다):</u>
6
<u>경우:</u>
<u><</u> 삭 제>

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경우: 100 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줄임. 다만,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사용료를 줄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7조(시설의 위탁)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u>사항은</u> <u>「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u> <u>위탁에 관한 조례」</u>를 준용한다.
- ③ ④ (생 략)

세b소의b(사용됴의 만완)
<u>사용</u>
제7조(시설의 위탁) ① (현행과 같
<u>о́</u> П
②
<u>사항은</u>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 (취례기 기수)
③·④ (현행과 같음)

[별표 1]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제6조의2 관련)

시 설 명	명 칭	소 재 지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2길7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50플러스 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구로구 오류로 36-25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도봉구 마들로 13길84		
	<신 설>	<신 설>		

[별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제6조의2 관련)

시 설 명	명 칭	소 재 지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2길7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50플러스 캠퍼스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구로구 오류로 36-25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도봉구 마들로 13길84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	<u>광진구 능동로 3길 73</u>

서울특별시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광진구 자양동) 신규 개관에 따라 [별표1] 인생이모작지원시설 명칭 및 위치(제6조의2 관련) 개정 및 사업비 · 운영비 추가 소요
- 2. 비용추계의 전제:
- 동부캠퍼스 관련 '25년 예산 편성액을 1차년도 기초 금액으로 설정하고
- 사업비(운영비) 증가율은 통계청 발표 기준 최근 3년('22~'24) 물가상승률 평균 3.66%로 가정하여 산정 ('22년 물가상승률 5.1%, '23년 물가상승률 3.6%, '24년 물가상승률 2.3%)
- 인건비 증가율은 최근 3년('23~'25) 총인건비 인상률 평균 3.8%로 가정하여 산정 ('23년 총인건비 인상률 3.1%, '24년 총인건비 인상률 3.9%, '25년 총인건비 인상률 4.4%)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 사업비(운영비)	1,321,475	1,369,841	1,419,977	1,471,948	1,525,822	7,109,063
지출	ㅇ 인건비	730,000	757,740	786,534	816,422	847,446	3,938,142
	출연금 소계(a)	2,051,475	2,127,581	2,206,511	2,288,370	2,373,268	11,047,205
수입	0						
TH	소계(b)						
] 총 비용(a-b)	2,051,475	2,127,581	2,206,511	2,288,370	2,373,268	11,047,20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지방세수입(출연금)	2,051,475	2,127,581	2,206,511	2,288,370	2,373,268	11,047,205
시비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							
	합계	2,051,475	2,127,581	2,206,511	2,288,370	2,373,268	11,047,205

5. 덧붙이는 의견: 없음

6. 작성자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평생교육과장 최소정

평생교육정책팀장 우효정

담 당 자 허준오(02-2133-3963, hahaher@seoul.go.kr)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51,475	2,127,582	2,206,510	2,288,370	2,373,268
사업비(운영비) 소계	1,321,475	1,369,842	1,419,976	1,471,948	1,525,822
중장년 경력인재 지원사업	175,329	181,746	188,398	195,293	202,441
취업 컨설팅	15,576	16,146	16,737	17,350	17,985
권역밀착형 중장년 잡페어	45,950	47,632	49,375	51,182	53,055
디지털 직무역량강화	56,000	58,050	60,174	62,377	64,660
4050직업훈련	125,000	129,575	134,317	139,233	144,329
경력설계상담	5,000	5,183	5,373	5,569	5,773
권역기반 네트워크 활성화	77,200	80,026	82,954	85,991	89,138
시민이용공간시설 및 안전관리	821,420	851,484	882,648	914,953	948,441
인건비 소계	730,000	757,740	786,534	816,422	847,446
기본급	658,500	683,523	709,497	736,458	764,443
제수당	71,500	74,217	77,037	79,964	83,003

- 인건비 산정기준 : 동부캠퍼스 소속 정규직 현원('25.4.기준) 14명(3급 1명, 4급 3명, 5급 3명, 6급 3명, 7급 4명) 기준으로 산정